



도정 ·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등 현안처리



▲ 제264회 입시회를 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 하고있다.

제264회 의회(입시회)

충청북도의회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제264회 입시회를 열고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현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하천정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개최, 일본 아마나시현 우호교류 방문단 내방, 전체의원 연찬회 등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직무연찬과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한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정종합홍보관 운영실태, 대통령 역사문화관 확장 개관식(청남대) 등 도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충청도의회 · 흑룡강성의회 우호교류 다져



▲ 10월 26일부터 6일간 충청북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초청으로 양 도 · 성의회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흑룡강성을 방문하였다.

충청북도의회는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우리 도의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의 초청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중국 흑룡강성을 방문했다.

심흥섭 부의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양 지역의 상호교류 · 협력증진 방안과 문화 · 경제 · 관광산업에 대하여 중점 합의를

였다.

또한 대표단은 '지금까지 다져온 우정이 양 도 · 성의 공동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써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흑룡강성 대표단은 '충청북도와 10여년동안 쌓아 온 우정을 바탕으로 양 지역 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상호 우의를 다졌다.

개 회 사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과 함께 가을의 정취가 한층 더해가는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반

갑게 생각 합니다.

비회기중에도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역행사와 민생현장을 돌아보는 등 분주한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확보와 투자유치, 추석명절 종합대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들녘에는 본격적인 가을걷이가 시작 되었지만, 유난히 늦은 날씨가 많은 올해에는 농산물의 품질과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 확대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농민들에게 무리한 경쟁력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으로 농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11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은 도정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질문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

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차갑고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이번 임시회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알찬 의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 10월 23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제6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처리하였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23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법률의 근거없이 재의 요구안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관련규정 개정 건의(원안가결), 의회비 비목에 위탁교육비·직무연찬비 등이 추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행자부 훈령) 개정 건의(수정의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안전 심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수정의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에 이행되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건의(정책위원회 계속 검토)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 도의회 방문



▲ 10월 12일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이 충청북도·야마나시현의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와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하였다.

시·도의회의장단 청주국제비엔날레 방문



▲ 10월 23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제6차 임시회를 마치고 2007 청주국제비엔날레 행사장을 방문하여 공예품 등을 감상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1월 21일부터 10일간 실시키로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 264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5일(제1차)과 10월 23일(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 2007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7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11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며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6일간의 회기를 운영키로 하였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을 듣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과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해당 실·국 및 사업소 등에 대해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 및 예산집행사항 등을 감사하게 되며 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는 11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억 7,235만 5천원 보다 1.3% 7,897만 4천원이 증액된 63억 5,132만 9천원으로 계상된 예산 대부분이 범정·의무적경비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되었다.



◀ 간담회

10월 15일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 안건심사

10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 조례안 심사 10월 22일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 열린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10월 18일과 10월 22일에 열린 제1차·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충청북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007회계연도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

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다. 내역을 보면 의정비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1천만원,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 1천만원,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10월 22일에 열린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여 3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등 상위 관계법령의 폐지 제·개정 등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이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규정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공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건설지원에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 보존부작합면적의 수의계약범위 확대 등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만,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범문의 미비점 및 실효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심사보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 본청 및 충북개발연구원, 충청북도개발공사 등 7개 기관(부서) 대상으로 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채택,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요구의 건 등 2007년도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였다.

그 밖에 우수인재를 발굴·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계획과 전략적 기업 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 예산심사 직무연찬 실시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문위원과 직무연찬의 시간을 갖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08년 당초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집행부로부터 당면현안 사항인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추가 재원조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08년 본격적인 시

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및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그리고 도민의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식품검사장비 구입비 등 4,335억 1,0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들 예산 중 산출근거 미비 등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비 500만원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향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국조보조금 등 재원감소로 인한 사업취소 및 축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그리고 자문위원과의 직무연찬회에서는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08년 당초예산 심사시 착안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충청북도 관계자로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시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시군간 기초노령연금 부담비율확정, 제도시행에 대한 대민홍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 간담회
2007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시 착안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과 직무연찬을 하고 있다.



▶ 예산안 심사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심사



▶ 간담회
10월 1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투자본부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윤숙)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중 소관부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지난 10월 18일에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투자본부, 농정본부,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위원들은 예산안이 금년도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집중추궁하고, 도민의 세금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농정본부 심사에서는 농가등록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제대로 된 통계 작성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심사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서 대하여는 원안대로 변경승인을 의결하였다.

10월 19일 오전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작성을 위한 의원자제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안을 마련하였다.

오후에는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대원 의원 외 6인 발의로 제안된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어 2007년도 행정사무계획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확정하였다.



▶ 예산안 심사
10월 18일 농정본부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건설문화위원회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등 심사



▲ 예산안 심사 10월 19일 문화관광환경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제264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현지 확인 활동, 집행부와와의 간담회 등 내실 있고 활발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의 균형적인 지원 여부, 구도지대장 전산화 사업예산 전액 감액한 사유, 차선도색재료(유리알 및 도료 등)

구입비를 삭감하여 차선도색 공사비로 과목 변경하여 반영한 사유, 헬기자동조정장치구입비 추가편성 사유, 영동소방서 청사환경시스템 조성사업비 추가편성 사유 및 금년 내 사업의 완료 여부, 충청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필요성,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사유, 청남대관리사업소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보수공사, 건물옥상 방수공사 등에 대한 기정예산 감

액 사유,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의 세입 감소가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해 질의 하는 등 예산안 수립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함은 물론, 예산안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월 8일에 상정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 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였다.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 12. 건설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료 조례개정 권고 사항으로서 도로부지 및 국유재산법의 점용 사용료의 부과방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하수의 안정적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먹는 샘물 허가 등 지역지하수 관리의 효율성 및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지하수관리위원회 등을 운영하도록 정하는 규정으로 지하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10. 18일에는 청남대 대통령역사문화관 확장 개관식에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 · 전시회 관람 및 직원들을 격려 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도정 발전에 노력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충청북도 추경예산 2조 4,577억원 수정의결 - 5억 7천 7백만원 과목 조정 -



◀ 간담회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화수)는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조정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사업 추진 효과와 추진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용역비 등 7개사업에 5억 7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금년도 새로

설치되는 투자진흥기금 30억원 적립에 대한 심사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확정예산액	제출예산액	비고
합 계	2,457,748,099	2,457,748,099	5억 7,700만원 감액 예비비로 편성
일반회계	1,965,443,964	1,965,443,964	5억 7,700만원 감액 예비비로 편성
특별회계	492,304,135	492,304,135	
공기업	소계	266,270,560	266,270,560
	지역개발기금	266,270,560	266,270,560
기업	소계	226,033,575	226,033,575
	충북과학대학운영	6,958,689	6,958,689
	의료급여기금	176,659,832	176,659,832
	농어촌개발기금	16,703,009	16,703,009
	학교용지부담금	19,853,897	19,853,89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858,148	5,858,148

예산안 심사 ▶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고 있다.





도정질문



권 광택 의원
(산업경제 위원회)

도로행정 개선 및 지방도로 확·포장 대책 등 촉구

질문 도로 확·포장 사업은 계획 당시의 우선 순위와 차량통행량, 사업의 필요성 등에 의해 사업비를 배분하고 장기공사를 조기에 완공 시킬 수 있는 도로행정 개선방안 강구대책은?

답변 [정우택 도지사] 우리도 지방도 사업은 지구당 사업비가 2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소요되고, 사업기간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8~9년 정도 걸리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은 지구당 사업비의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임.

앞으로 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공사 중인 사업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군특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시급성 등을 고려, 사업비 배분을 차등화 하여 장기공사를 조기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지방도 510호선 및 지방도 596호선의 조기 확·포장 대책은?

답변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청원군 오창읍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지난해까지 220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 50억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55% 공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하여 늦어도 충청남도에

서 시공 중인 충북도계~병천구간 도로 완공 이전에 개통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역~신촌동간 지방도 596호선은 늘어나는 물동량과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간 연결도로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2005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국가 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조기에 확·포장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발전방안

질문 산업단지의 발전방안 및 신규 산업단지의 체계적 조성 대책은?

답변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 청주 산업단지가 추진하는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자연순환형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향후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같이 생산과 주거, R&D 등이 함께 공존하는 테크노폴리스 형태로 조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련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된 종합 대책은?

답변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치매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신원확인 팔찌 보급 등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시설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나,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질문



김 화연 의원
(건설문화 위원회)

중국어마을 조성방안

질문 중국어마을 조성 사업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민자유치 진척사항, 향후 추진일정, 제반 부대사업 계획, 타 지자체와 경쟁력 확보 및 유치과열 경쟁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해소방안은?

답변 [정우택 도지사]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 추진하였으며, 특별히 체험형 중국어 교육이 테마로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 관광복합단지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미 충북 개발연구원을 통해 사업의 규모와 타당성,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마쳤으며, 중국어 체험형 교육시설 설치는 물론, 국제문화교류 및 비즈니스타운, 상업시설, 주거공간, 몇 개의 테마공원,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음.

공약사항 관련

질문 단양을 석화석신소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 [충청북도지사 정우택] 그동안 도에서는 단양지역 석화석신소재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한국 석화석신소재 연구재단]을 2004년도에 설립하여 국·도비 등 총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09년까지 국·도비 등 총 97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연구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중임.

질문 단양 원주민 거주 민속마을 추진 현황은?

답변 [정우택 도지사]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체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한다고 보며, 단양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속마을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

화 되면, 그러한 관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 하겠음.

용역발주 관련

질문 용역발주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심사기구 신설을 추진할 의향은?

답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2006년 5월부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 심의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용역발주하기전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증하는데 다소 미흡했으므로 앞으로 용역발주 납발방식 및 용역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용역심의기구 운영을 신중히 검토 하겠음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

질문 지역간 균형 있는 기업유치와 외자유치계획 및 고용증대 방안은?

답변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에서는 도내 북부, 남부권의 7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균형투자촉진협의회” 구성 운영과 북부 및 남부권의 지역전략산업 연관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투자유치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략산업 발전 촉진과 IT·BT 등 첨단산업의 질적 고도화 및 집적화를 위해 오창, 오송의 IT·B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외 첨단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오고 있음.

교육청 관련

질문 유자격 특수교사 배치 및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답변 [이기용 교육감] 학생수에 따른 정원방법 변경에 따라 미배치교원 총원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하므로 특수교사의 학급당 교사정원 배정방법으로 학생의 감소에 따라 교원증원을 억제하고 있어 특수교사 전원 충원은 어려우며, 특수교사를 일반교과교사와 분리하여 별도 정원을 배정할 경우 정규 특수교사를 전원 충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조원은 국립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교육부에서 특수학급 학생수나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전액 국고지원의 특수교육보조원을 급당 1명씩 배치하고 있음.



도정질문

국제 한방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충북도의 실천의지는?



이 중 호 의원
(행정자치 위원회)

국제한방엑스포 관련

질문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로드맵 및 충청북도 차원의 분명한 실천의지는?

답변 [정우택 도지사] 본 엑스포는 2010년 9월경 2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내 33만㎡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임.

'07년 1월 제천시 한방엑스포 기본연 구구역 완료 제천시에 한방 엑스포 추진 전담인력 배치, 2007년 1월 엑스포 메인 시설인 한방생명과학관이 기획예산처의 BTL사업으로 선정, 제반사항 검토 추진 중에 있음.

앞으로 제천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구축함은 물론, 2002년에 개최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 개최하는 제 천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균형 있는 투자 유치 전략

질문 지역간 불균형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 해 및 지역간 균형있는 투자유치 추 진전략은?

답변 [정우택 도지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 4기 출범 후 현 재까지 도내 북부·남부권의 투자유치

실적은 금액기준 약 8%정도 수준으로 다소 미약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중부권 과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현안임을 잘 알고 있음.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있 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도내 북부, 남 부권의 7개 시·군 부단체장 참여 “균형 투자촉진 협의회” 구성하여 기업유치 촉 진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겠으며, 보은· 옥천·영동과 괴산·단양지역의 LNG 조기공급 추진 등 기업 유치 촉진 인프라 구축과 투자유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 무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산업단지 조성계획

질문 도의 2007~2009 산업단 지 조성계획은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소 외되어온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단지 조성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추가조성 계획과 장기적인 산업단지 개발전략은?

답변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 기 업의 입지수요로 인하여 그간 우리도의 산업단지 조성은 중부권에 다소 편중되 게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 북부·남부권 교통인프라 개선되고 있어 2015년까지 제천 제2산업단지, 단양 신소재산업단 지, 보은 동부지방산업단지, 영동 용산산 업단지 등 북부와 남부권에 총 6개소의 지방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

또한 지역간 균형있는 투자와 개발촉 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입 지 중·장기계획」 소외지역에 대한 개발 촉진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 도록 하겠음.

답부 “무유(無有)보다 불균(不均)이 더 두렵다”는 중국의 격언을 인용, 150 만 충북도민 모두가 진실로 잘 살고 행복 해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도민들의 바람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명심 하여 주시기 바람.



도정질문

충북과학대학 확장이전과 공무원 특별채용 확대 견해는?



박명웅 의원
(교육사회 위원회)

충북과학대학 관련

질문 충북과학대학을 옥천읍 외곽으 로의 확장·이전 및 공무원 특별임용 확대에 대한 견해는 ?

답변 [정우택 도지사] 대학 이전 문 제는 단시일 내에 결정할 수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대학을 이전하기 위해서 는 막대한 소요재원확보는 물론 이전에 따 른 도심지공동화 문제, 지역주민·전문 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같은 광범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장기적으 로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고있음.

그리고, 공무원 특별임용은 대학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임. 앞으로 특별임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 내 자치단체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 대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전략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음.

학교용지부담금의 대책방안

질문 교육환경개선 및 미전출된 학 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대책과 지역균형 발전 전략사업관련 견해는 ?

답변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충 청북도 교육지원조례」를 근거로 금년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아울러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 마련한 “충 북인재양성전략(안)”에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 관련 기관별 로 분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 히, 내년부터는 1천억원 규모의 충북인 재양성재단설립 및 인터넷 수능 교육 방송

서비스 실시 등 교육강도 실현 시책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음.

그리고,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헌결 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될 경우 환급을 위한 소요 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환급재원을 제 외한 잔여 징수금은 향후 교육청과 협의 전출할 계획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관련견해는 도 종합계획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제1단계 전략사 업은 이미 승인 완료하여, 당장 사업비를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차기 사업선정시 도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민 소득증대 사 업이 선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 겠음.

농산물 수출 관련

질문 수출작목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의 대책은?

답변 [김정수 농정본부장] 환율하락

과 고유가 경제의 지속으로 인한 수출여건 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에 총 7개 분야에 30 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민선4기 2차년 도 부터 2010완성 목표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해 28개 핵심 이행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3억달러의 수출실 적을 거양할 계획임.

고입선발고사 부활 관련

질문 ‘중학교 학력평가’ 및 ‘고입선 발고사’ 부활에 대한 기본입장은 ?

답변 [이기용 교육감] 중학교 학력평 가는 '07년 9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에서의 실시·합의 사항으로 중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내실화와 교육활동의 질 관리 강화 등 학교교육역 제고를 위한 것 이며, 고입선발고사 부활에 대한 기본입장 은 본래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수·학습 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평가 기회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도 단위 평가 실시로 학교 자체평가의 한계 극복 등이 목적으로 '08년 1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활 여부 및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겠음.

의원칼럼

로스쿨 총정원 결정...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필 용 의원
(행정자치 위원회)

요즘 신문보나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로스쿨 총정원 결정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넘어 분노의 감정이 들 정도이다.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당초의 명분과 취지는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일부 특권 계층의 저항과 로비에 굴복해버린 정부당국의 줏대없는 교육행정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겪고 있을 뿐이다.

지난 10월 3일, 로스쿨 설치인가를 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명단이 외부단체에 의해 사전 유출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데 이어, 10월 9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차관보 한분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도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한다,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로스쿨 총정원 책정 및 인가에 있어 정책결정의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무부처 차관보의 발언은 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도 쉽게 꺾여 버렸다. 로스쿨 유치에 간절히 바라던 충북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변호사가 부족하여 변호사 1인당 국민수가 OECD 국

가 평균 1,339명 대비 약 6배인 7,633명에 이르고, 턱없이 부족한 변호사로 인해 국민들은 필요한 만큼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230개 시·군·구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무변촌 시·군·구'는 122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충북은 더욱 심각하여 12개 시·군·구 중 67%에 달하는 8개 시·군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재에도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에서,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국민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법률서비스조차도 차별과 불평을 감수하라는 것인지...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책을 확정하면서, 비공개 논의만 거친 채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도 없이 로스쿨 총 정원을 1,500명으로 확정된 교육인적자원부의 '묻지마' 식 정책결정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실망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보다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여 법률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총 정원은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열악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감안하여 로스쿨은 반드시 시·도별로 1개교 이상 설립되어야 한다.

국회와 교육당국은 로스쿨 도입에 있어 더 늦기 전에 이 같은 간절한 바람이 담긴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충북도는 150만 도민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찾아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의원칼럼

아무도 몰라서는 안 된다



최 미 애 의원
(교육사회 위원회)

지난 토요일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일본 동경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한 것으로 영화 개봉 이후 일본사회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영화의 줄거리는 아버지가 각기 다른 4남매의 엄마가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후 아이들이 피폐일로를 걷는 가슴 아픈 내용이며 전형적인 아동방임에 대한 고발이다.

아동방임이란 아동학대 중 한 가지 유형으로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두 살 난 어린 아기를 방에 버려 둔 채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 아이가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났었다.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안 되지만 아동의 유기, 방임, 학대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늘어만 가는 조손(祖孫)가정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면서 출산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거론하지만 버려지고 학대 받고 죽어가는 아동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양적으로 많이 낳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희생당하거나 다치거나 나오지 않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겠다는 생각이 더 필요할 시점이다.

지금 자치단체는 복지나 청소년사업을 철저히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만 의존하고 청소년, 아동에 대한 정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구호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는 아동의 방임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까딱하면 방임의 상태로 내던져

질 수 있는 아동들의 범주를 확인하고 어떤 틀에서 관리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한 부모 가정의 어린이, 조손(祖孫)가정이나 빈곤가정, 그리고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의 가정이 일차적 관찰대상이다.

이를 감시하고 관찰할 의무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그리고 동사무소나 지역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통·반장들로 구성하고 교육해야 한다. 방임과 학대받는 어린이를 발견하기 가장 수월한 사람들이다. 자치단체는 이들의 신고를 조례 등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는 일찍 발견하고 치료해야 효과가 있다. 학대나 방임에 오래 방치된 어린이는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다른 학대에 비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방임’의 경우도 어린이에게는 이 경험이 성장실폐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아동복지시설도 감시 대상이다. 이곳에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성적학대, 폭력, 가혹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개별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발견한 교사나 이웃주민이 가정문제로서 개입할 수 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도 더 늘리고 전문기관이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문제부모에 대한 부모교육과 치료도 절실히 필요하다.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어린 영혼에 대한 연민과 애정 그리고 성인다운 책임의식이 없는 미성숙한 어른일 수 있고 그들도 어린 시절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족이 처한 빈곤상황이 아동의 방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빈곤가정에 대한 어린이 대책이 치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방임과 학대에 내몰린 어린이들을 구출하고 맑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그리고 이웃사람들이다. 어린이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아무도 모른다면 정말 구출될 희망은 전무하다. 몰라서는 안 된다.

주요처리안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상위 관계법령의 폐지, 제·개정 등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07.5.)에 따른 조문 정비
-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지사의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단지 조성시 마다 산업단지별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것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
- 유사서류제출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현실운영에 맞게 시장·군수에게 위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인 공원조성계획 결정" 중 "소공원 조성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사무를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 조수보호구역 설정, 조수보호임명, 조수수입신고 등의 도지사 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위임 사무를 삭제함.

2.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이 조례와 규칙에 각각 명시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팀제 운영에 맞게 간사와 서기의 지명방법을 개선
- 상위법령에 의거 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자격 보완(안 제8조제2항제4호)

- 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지명방법 개선(안 제8조제5항)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조직구성조건 명시
-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2제2항)

3.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 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기준을 변경함에 따라「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을 대부분 경우 대부료의 감면을
-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요건 및 범위 변경(안 제40조)
- 좁고 긴 모양의 토지에 폐하천 추가(제2호)
- 사유건물이 위치한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제1호·제4호)
- 일단의 소규모 토지 범위 조정 : 시 지역 1,000㎡이하, 기타지역 2,000㎡이하인 토지로 일치
- 분수림의 설정을 삭제(안 제44조)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한도액으로 변경(안 제64조)
- 총 보상금 : 1,000만원 ~ 3,000만원
- 필지별 보상금
· 관인도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 : 200만원 → 600만원
· 기타재산 : 100만원 → 300만원

4.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안이유]

- "첨단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인 "전략산업"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시책을 중시하고 전략산업 및 지역과학기술 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함을 책임과 의무로 정함.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전략산업 지원사업, 과학기술진흥 사업 및 과학기술 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진흥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이 수반되는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위원회 기능 중 인력양성 시책 및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사항 추가.
- 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 2인을 두고, 당연직 위원으로 도의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하는 사항 추가.
-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추가하도록 함.

5.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중 개정된 범조항 및 내용 정비
-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하천 사용료 산출 근거를 도로부지 및 국유재산법의 국유지와 항평 유지

[주요내용]

- 하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등 하천법에서 정한 감면규정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가 10%이상 상승시 감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작목

적으로 하천부지 점용시, 점용료 산정기준인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토지가격의 1/100"로 조정하려는 것임

6.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이유]

- 지하수의 안정적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청북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하수 관련 교수, 전문가, 공무원, 환경단체 등 15명 이내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지하수 관리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기능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7.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변경 기금 내용
- 가금명 : 투자진흥기금
- 3,000백만원
- 운용계획 : 금융기관 예치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150만 도민 모두에게 충청북도의회는 열려있습니다.

☞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 도의회 의원 소개의 견서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 성명 기재,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 청원제출 사항 |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문의 |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43-220-5151

☞ 민원안내

| 민원안내 |

- 진정이나 일반민원 제출시에는 별도의 의원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달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

| 민원제출 방법 |

- 우편민원 :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민원 : <http://assem.cb21.net/>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화민원 : 043-220-5151
- 팩스민원 : 043-220-5159

☞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 방청인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 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 총무담당관실 전화 : 043-220-5111

제2회 어린이 의회교실 개최



▲ 10월8일 청주 중앙·경산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 의회교실을 개최하고 의정체험을 하였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오장세)는 도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정체험을 통한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장차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적 역량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7년 10월 8일 청주 중앙·경산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어린이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의장단 선거, 본회의 안건 처리(조례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한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장

을 견학 공예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조례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의정출마자 소견 등 발표문을 직접 작성하고 발표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취하였을 뿐 아니라 행사의 내용과 질을 한 단계 높였다.

충청북도의회 오장세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의정체험을 통해 좀 더 큰 포부를 갖고 학업에 전념하여 모두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일꾼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 방청



▲ 10월 17일 옥천 의용소방대원들이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답변 상황을 방청하고 있다.



▲ 10월 16일 단양군 주민들이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답변 상황을 방청하고 있다.

건강보감

안면 신경 마비

회사원 A씨(42·남)는 지난주 산행을 다녀 온 후 평소와 다름없이 자고 나서 양치질을 했다. 우연히 입을 행구려고 물을 머금다가 한쪽으로 물이 새어나가며 흘러게 되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 한 적이 있다. A씨처럼 찬바람이 불면 어깁살이 찾아오는 것이 안면마비이다. 식사를 하다가 음식이 한쪽 볼과 치아 사이에 머물러 불편하다거나 혹은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난 뒤 얼굴 한쪽이 이상한 느낌이 들며, 눈이 꼭 감기지 않거나 웃을 때 표정이 이상하다고 하소연하는 환자들 중종 있다.

이처럼 안면마비(구안와사)는 대부분 감기 기운이 있거나 찬바람을 쏘였을 때 귀 뒷부분에 가벼운 통증이 생겼다가 반나절쯤 지나면 얼굴 반쪽이 일그러지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아무 증상 없이 아침 잠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이내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질환은 남녀의 구분이 없으나 환자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고 20~50대 연령층에 많지만 어린이나 노인에게도 발병한다. 증상은 한쪽 얼굴이 마비되며 따라서 마비가 되지 않는 정상 쪽으로 입이 당겨 돌아가며, 마비된 쪽의 이마 주름살이 잡히지 않고 눈도 제대로 감을 수 없게 된다. 입술 주위도 마비되어 발음이 제대로 안되고 음식물이 새며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다가와 눈물이 흐르고 혹은 마비된 쪽의 귀가 예민하게 되어 날카로운 소리에 통증을 느끼며, 심하면 혀의 미각세포도 마비되어 맛을 못 느끼게 되기도 한다.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이런 증세를 호소하면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들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혹시 중풍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 물론 중풍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중풍은 중추성으로 얼굴의 마비 외에 팔다리의 마비나 대소변 장애 등 다른 증상도 수반

되어 증상의 차이가 있으며 말초적 안면 신경마비인 '구안와사'와는 구분되어 치료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구안와사는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면 거의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며 "병의 경과와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초기에는 약간 더 증상의 진행을 보이다가 2~3주 정도에 뚜렷하게 호전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간을 지나서 4~6주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초기의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찬바람과 같은 외기의 영향, 담이나 어혈과 같은 병적 산물 및 신체의 허약과 같은 조건들로 인하여 안면에 분포된 경락에 기혈순환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보고 치료는 이와 같은 병적 조건을 제거하여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는 것이 관건이 된다.

초기의 치료는 가능한 한 증상의 진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연구

패독산, 이기거풍산 등의 한약 복용과 침 치료를 위주로 하면 마비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다.

이밖에 부항 등의 물리요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얼굴에 분포된 경락에 따라 안마(마사지)를 하거나 표정을 짓는 회복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발병한 지 오래됐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는 약침치료를 통하여 더욱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

요즘은 드문 경우지만 민간요법으로 일종의 약초라 하는 풀을 채취하여 찢어서 피부에 붙여서 살갗을 헐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발포요법'이라는 한의학 적 치료방법의 한 종류이지만 구안와사에 효과 있는 적절한 치료법은 아니다. 함부로 근거 없이 시술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 한의사를 통하여 바른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진단한 후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태영 (백제한의원장)

의회용어 해설 (ㄱ~스)

1. 가결(可決)과 부결(否決)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2. 감표위원(監票委員) 무기명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효·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3. 개원(開院)과 개원식(開院式)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첫 회의를 여는 것을 「개원」이라 하며, 총선이후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4. 개의(開議) 「開議」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5. 개회(開會)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제0회 00의회(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6. 건의안(建議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7. 결의안(決議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쌀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8. 경호권 회기중 의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9. 계류(繫留)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10. 공전(空轉)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流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11. 공청회(公聽會)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12. 공포(公布)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조례)을 도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13. 과반수(過半數) 過半數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14.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15. 대안(代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16. 동의(動議) 「動議」란 합의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제출 필요없이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통상 구두로 발의하게 되고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된다.

17. 동의안(同議案) 도지사·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同議)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18. 미결(未決) 「未決」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19. 미료안건(未了案件)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한다.

20. 발안(發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고, 그중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원안(原案)을 의안이라 한다.

21. 발언권(發言權)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신청을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22. 발언신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23.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의제관련 발언으로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심사보

고에 대한 보고보고 및 자각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 등이 있으며 의제관련외의 발언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이 있다.

24. 발의권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 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25. 발의(發議)와 제출(提出)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26. 발의자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27. 방청(傍聽) 일반인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8. 사회권(司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29. 산회(散會)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30.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위원회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 「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31. 상정(上程)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000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 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한다.

32. 서면답변(書面答辨) [광의]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서면 질문을 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형식을 뜻한다.

33. 서면질문(書面質問)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다.

34. 선결문제(先決問題) 동의를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를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先決問題」또는 「先決動議」라 한다.

35. 소수의견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36.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의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37. 속개(續開) 「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38. 속기(速記)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39. 속기록(速記録)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 내용을 모아는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40. 속기사(速記士) 속기된 내용은 다시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시킬 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41. 수정동의(修正動議)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42. 수정안(修正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43. 심사보고(審査報告)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

44. 심의(審議)와 심사(審査)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의 논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의원동정



◀ 임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10월 13일 학산중학교에서 열린 학산면민 체육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최미애 의원
(비례대표 통합신당)

10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포럼 주관 대선정국에서 각 정당 여성정책토론회 참석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10월 26일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음성군 기업체임직원 축제에 참석, 참석자 및 관계자 격려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10월 25일~27일 진천군에서 열린 제46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회식 및 주요행사 추진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10월 24일 옥천읍 관성회관에서 열린 옥천읍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주민의견 수렴



◀ 이대원 의원
(청주 제2선거구)

10월 23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 수렴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10월 26일 보은읍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은군 농업인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 수렴



◀ 정운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10월 11일 농업명품도충북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이연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10월 15일~19일 충주 탄금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 참석, 관계자 및 선수단 격려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10월 25일~27일 진천군 일원에서 실시된 도민체전에 참석, 진행·체육시설 비교 및 보은군 선수단 격려



◀ 최재욱 의원
(증평 제1선거구)

10월 24일 새마을 증평군지회에서 실시된 새마을소년소녀 가장 1일 아버지 되어주기에 참석, 참석자 및 관계자 격려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10월 13일 청원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청원군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 참석자 및 관계자 격려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10월 26일~31일 중국「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와의 우호교류행사에 참석, 상호 교류·협력 증진 방안 협의 및 관계관 격려



◀ 김항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10월 13일 괴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6회 전국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전국시·군·구 대항 검도대회 참석, 축하 및 주민의견 수렴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10월 1일 청원군 군민체육대회, 참사랑병원 경로잔치에 참석, 축하 및 관계관 격려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10월 18일 음성군 대소면 내산보건진료소 준공식에 참석, 축하 및 주민의견 수렴

〈말풀이 세상풀이〉

‘그레섬의 법칙’과 양질의 유권자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말은 시중에 품질이 좋은 화폐와 품질이 좋지 않은 두 가지 화폐가 나돌기 시작하면, 품질이 좋지 않은 화폐만 유통되고 품질이 좋은 화폐는 자연히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뜻이다.

가량 시중에 두 가지의 은화가 유통된다 하자. 두 은화의 액면 표시가격은 똑같이 100원이지만, 하나는 은의 함량이 95%인 양화요, 다른 하나는 함량 10%의 악화다. 이 두 가지 화폐를 동시에 유통시킬 경우, 은의 순도가 높은 양화는 각 가정의 장롱 속에 은닉되고 시중에 순도가 낮은 악화만 유통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그레섬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비단 경제·금융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의 각종 법률과 제도, 풍습과 시류의 전과, 정착과정에서도 회자되는 얘기다.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충돌하는 과도기사회에, 유익한 외래문화보다 퇴폐적인

저질문화가 더 빠르고 강하게 잠식해 드는 경우도 그렇고, 경제개발도상국에 우수한 신상품의 거래 보다, 저질의 ‘짜들’ 상품이 더 극성스럽게 대중의 소비심리를 장악하는 경우도 그렇다.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재의 선발이나 지도자의 선정에도 이 말은 적용된다. 능력 있고 내실을 중시하는 인물은 타인, 혹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들어 내지 않는 은둔과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지만, 능력 이상의 인정이나 지위를 중시하는 인물은 과시(誇示)나 돌출행동을 통해서라도 자기존재가치의 확산에 힘쓰게 마련이다. 대중의 눈에 그 존재가 부각되는 것은 당연히 후자다. 악화가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한 인물의 능력과 성품을 정확, 공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지명이나 발탁의 경우는 한 사람, 또는 극소수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기준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일관되고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선거의 경우는, 그 판단기준이 투표권자 수만큼 다양해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일관성이나 합리성의 보장도 어렵다.

대중의 판단력은, 그들의 평균지능을 가진 개인의 판단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대중이 도출해 내는 결론이

나 행동에는 그만큼 덜 이성적이고 덜 합리적이라는 위험요소가 잠복해 있다. 군중의 즉석결정, 집단행동이라면 판단 오류의 위험은 더 높아진다. 주동자의 선동에 따라 군중심리가 발동, 개인의 판단기회가 박탈되고 이성은 매몰되기 때문이다.

선거 때의 투표행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판단 오류의 위험과 무관할 수는 없다. 개인의 판단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해도, 소위 대세라는 것에 휩쓸리기 쉽고 투표대상 인물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 한시적인 관찰, 외형적인 인상이 판단을 좌우할 염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투표권자가 공정한 권리행사의지를 가졌대도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도자를 꿈꾸며 선거를 의식하는 인물은 항상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다. 역할수행의 목적을 조직의 능률보다 공적 현양에 두는 이가 있는가하면, 능력과 시와 공로 과장으로 황홀한 착각에 빠져있는 이도 없지 않다.

지난 대선(大選) 때는 기막힌 흑색선전에 속은 유권자들이 집단으로 판단오류를 범한 탓으로 회자되는 말대로 ‘막무가내 인사’가 ‘대쪽지도자’를 구축(驅逐)하고 승리를 장악하는 정치권의 ‘그레섬 법칙’을 입증했다. 그 바람에 이번 대선에는

‘그렇다면 나도 대통령 꿈’이라고 황홀한 착각에 빠진 인물들이 대풍년을 이뤘다. 이른바 악화의 창궐이다.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거르고 걸러진 인물들이 국민의 최종심판을 받게지만, 애초에 나서는 것 자체가 유권자를 우롱하는 소치라 할 만큼 가당찮은 인물도 여럿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지엄한 자리를 누군가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봉긋방의 깔방석처럼 그 격을 낮춰놓은 소이려니웠다. 국민 누구나 모든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진, 만민평등의 민주국가라지만, 대통령 자리는 지엄한 것이고 국구제민의 능력 있는, 참된 지도자가 앉는 자리다.

그 지엄의 자리에만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역(逆)그레섬의 법칙’이 적용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하지만 유권자가 대중(大衆)속의 일원이 아닌, 흔들림 없는 독립된 선택권자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환골탈태의 진통을 감내해야 한다. 판단 오류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양화가 장롱 속에 숨고 악화만 유통되는 시장은 언제든 무너진다. 참된 지도자를 선택, 그 능력이 국가경영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양질의 유권자에게 주어진 막중한 의무다.

안수길(소설가: 청주문인협회 회장)